

제 호

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시험·검사기관 지정서

1. 기 관 명:
2. 소 재 지:
3. 업무수행 범위:

위 기관을 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 제22조제4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시험·검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국가기술표준원장

직인